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04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정을호·이기헌·백승아

문금주 • 위성락 • 홍기원

안도걸 · 김한규 · 서삼석

박수현 • 조승래 • 안규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 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의 중단 등으로 누구보다도 진로교육이 필요한학교 박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지적이 있음.

이에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법률 제 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생에게"를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게"로, "학생의"를 "학생 및「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생"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생에게"를 "학생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학생이"를 각각 "학생등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생은"을 "학생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생의"를 "학생등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생의"를 "학생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학생이"를 "학생등이"로, "학생에게"를 "학생등에게"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학생에게"를 "학생등에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학생의"를 "학생등의"로, "학생에"를 "학생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 제1조(목적) ----학생 및 「학교 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 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년에게-----학생 및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법률ㅣ 제2조제2호에 따른 학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교 밖 청소년의-----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 1. ------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생 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등"이라 한다)-----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 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 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 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 게-----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

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	한다.	

- 3. "진로체험"이란 <u>학생이</u>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 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 을 말한다.
- 4. "진로정보"란 <u>학생이</u>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 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 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 한다.

5. (생략)

-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생 략)
 - ② 모든 <u>학생은</u>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 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진로교육은 <u>학생의</u>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생 략)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 <u>학생등</u>	<u>o]</u> –
 4 <u>학생등이</u>	
5. (현행과 같음)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현행과 같음)	
② <u>학생등은</u> ③ <u>학생등의</u>	
	片

- 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u>학생의</u> 발달단계 및 소 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생이</u>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u>학생에게</u> 진로체험을 제공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
 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u>학생에</u> <u>게</u>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 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 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의 책무) ①
<u>학생등의</u>
· ②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
려대상자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u>학생등이</u>
- <u>학생등에게</u>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학생등
에게
<u> </u>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u>학생의</u>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등이 <u>학생에</u>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①
학생등
의
<u>학생등에</u>
(2) (현행과 같음)